

원하고 6조 2,000억원(77%)은 서울시가 자체 부담하고 있습니다.

한편, '98. 10월말 현재 서울시의 총부채 5조 4,947억원(원금기준)중 지하철건설에 따른 부채가 4조 8,721억원(88%)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약 10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제3기 지하철 건설을 계속할 경우 서울시 재정의 부실화는 피할 수 없으며, 민생과 직결된 여타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큰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 운영주체인 지하철공사의 경우 제1기 지하철건설 당시의 부채는 1조 7,602억원에 불과하였으나 '98년말에는 2조 9,638억원에 이르러 원금상환 부담은 갈수록 늘어만 가고 있어 공사 예산의 50%를 부채상환에 사용하다 보니 만성 경영적자에 허덕이고 있으며, 제2기 지하철건설 완료후 건설부채는 역시 도시철도공사가 안을 수밖에 없어 경영악화는 지하철공사보다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서울시와 산하 공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우리 서울특별시의회는 '95년 9월 및 '97년 3월과 '97년 9월 등 수차례 걸쳐 지하철 건설비중 50%이상을 국고에서 지원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민은 내국세 총액 35조 5,000억원('96년 징수기준)중 18조 5,000억원(52%)을 부담하고 있으며, 1인당 국세부담도 177만원으로 타 시·도에 비해 2배이상 부담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서울시를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의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선진외국의 경우 중앙정부의 지하철건설지원 비율이 50% 이상이며, 향후 중앙정부가 서울시에 50%를 지원하더라도 평균 국고지원 비율이 30%에도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시 재정파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정부가 지하철 건설비용의 50%이상 지원하여 줄 것을 다시 한 번 재촉하며, 이의 보장이 없는 제3기 지하철건설계획은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밝히는 바입니다.

1998. 12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일동

학교운영위원회자문기구화에대한반대결의문

학교운영위원회는 '95.교육개혁위원회에서 교육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규제와 통제 중심의 학교운영을 지양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창의성에 바탕을 둔 학교 운영체제로 전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인사의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교육의 민주자치 정신을 구현코자 설치·운영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이 학교운영위원회는 현재 학칙의 제·개정, 학교예산 및 결산,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등 학교 운영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함으로써 점차 학교의 운영을 보다 민주화, 투명화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담당하고, 초기의 시행착오를 거쳐 점차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문교보사위원회에서는 지난 제109회 임시회에서 학교운영위원회조례개정을 통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가 지체없이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부모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등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위해 노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화하는 것을 합의하였다는 소식을 접하고 상당한 우려를 금할 수 없어 이렇게 결의안을 제안케 되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이제 공립학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에서도 설치를 의무화하여 단지 사립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로 학부모의 학교 참여권이 봉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학부모의 바람입니다.

그럼에도 이같은 의견이 반영되기는커녕 학교 운영위원회가 자문기구화된다는 것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이전의 학교 육성회와 같이 이름만 가진 기구로 전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교육개혁의 후퇴요, 사립재단연합회와 교장단의 로비에 의한 결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서울시의회 의원은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이 자문기구로 약화되어 학교를 민주화하고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교육개혁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학교운영위원회가 유명무실화되는 것을 천만 서울시민과 함께 반대합니다.

이에 우리 서울시의회의원 일동은 공립학교

뿐 아니라 사립학교에서도 공립학교 수준의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운영되는 것이 교육개혁의 취지에 일치한다고 인식하고, 이에 일부 사학재단과 교장단의 기득권 옹호 차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결의하는 바입니다.

1998. 12. 29
서울특별시회의의원 일동

공공기관에서의 서울시 등록전세버스 사용에 관한 청원 의견서

- 청원명 : 공공기관에서의 서울시 등록전세버스 사용에 관한 청원
- 처리하여야 할 기관 : 서울특별시
- 채택의견
-청원의 요지는 타 시·도에 등록된 전세버스가 서울시내에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상주영업을 함으로 인하여 서울시내 전세버스업체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 타 시·도 동종업체의 시내 불법영업 행위를 단속하고, 서울시내 소재한 각급 공공기관이 전세버스 이용시에는 서울시내 등록된 전세버스를 우선 활용토록 행정제도하여 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타 시·시도에 등록된 전세버스가 서울시내

에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상시 주차시켜 영업하는 행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별표2의 위반내용 3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속대상이 되며, 타 시·도에 등록된 전세버스가 영업외에 차고지가 아닌 시내에서 밤샘 주차할 경우에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별표2의 위반내용 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속이 가능하므로 불법영업 행위에 대한 단속이 필요함.

-그리고 서울시등록전세버스의 시내소재 공공기관의 우선 사용권장 내용은 전세버스의 사업구역이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우선 사용을 강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등록업체의 영업구역을 위반한 불법영업, 덩핑계약 등 운송질서 문란행위가 일반화되어 있어 전세버스운송사업계의 운송질서 확립이 시급한 실정임.

도시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

의안
번호 103

제출년월일 : 1998. 10. 7.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 1. 안건명 : 목동 405번지 일대 용도지역 변경 결정 및 용도지구(미관지구) 결정
- 2. 입안내용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 결정

위 치	용도지역변경		면적(m ²)	용도지구 지정	비 고
	당 초	변 경			
양천구 목동 405번지 일대	일반주거 지역	일반상업 지역	62,860	제1종미관 지구 (62,860m ²)	목동 중심축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

- 3. 제안사유 및 검토의견
○목동 405번지 일대는 목동 중심축에 위치하나 목동 택지개발 사업시 제외된 지역으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구역 지정후 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어 단절된 목동중심축의 상업기능을 연속화하고 서울시 서남권 지역중심 기능으로 육성 발전시킴은 물론, 계획적인 개발을 추

진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과 동시에 집단 미관지구로 결정코자 함.

- 4. 참고사항
○현재의 도시계획사항 : 일반주거지역
○주민의견 청취결과 : 4건(미반영)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결정권자 : 서울특별시